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 정 조 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9. 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8. 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8. 24.

다. 상정일자 : 제10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4. 9. 3)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유미 의약과장)

가. 제안이유

- 2003년도말 도입하여 관내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 하던 골다공증 검사대상자를 갱년기 여성 등에도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골다공증의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골다공증 발견을 위한 검사항목과 비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사명은 골밀도검사로 하고, 검사비용은 4,500원으로 책정하되,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한다.(안 제2조제2항관련 별표)

- 1) 마포구 거주 주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 2)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1,2급 장애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0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 별표에 골다공증 발견을 위한 골밀도 검사 항목과 비용을 신설하고 경로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마포구 거주 주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1,2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0 마포구보건소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골밀도 측정기를 구매(소요예산:27,390천원)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2004년 8월 17일 현재 총 392명을 검사(만65세 이상)하였음.

골밀도 검사결과 392명 중 정상은 49명(12.5%)인데 반하여 골감소증: 205명(52.3%), 골다공증: 138명(35.2%)으로 골다공증 발생빈도가 높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골다공증 예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신동선 위원) : 1,2급 장애인이 골밀도검사 무료대상자인데 확대할 용의는?
- 답변요지(박유미 의약과장) :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에게 골밀도검사가 필요함.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검사료가 4,500원인데 타구사례는?
- 답변요지(박유미 의약과장) : 대개의 구가 7,000원에서 10,000원정도 이고 우리구가 최저가격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4. 8. 1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3년말 도입하여 관내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던 골다공증 검사대상자를 갱년기 여성 등에도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골다공증의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골다공증 발견을 위한 검사항목과 비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사명은 골밀도검사로 하고, 검사비용은 4,500원으로 책정 하되,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한다.(안 제2조제2항관련 별표)

- 가. 마포구 거주 주민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자
- 나.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
- 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1,2급 장애인

3. 개정근거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 등)(개정1992.2.8 법률제5852호)

4. 조 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4. 7. 10 ~ 2004. 7. 3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4. 8. 16)
-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수수료액”표 4.검사란 중 나.수질검사 다음에 “다. 골밀도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검사	다. 골밀도검사	1회	4,500원	무료대상자 . 관내거주 만65세 이상인 자 . 1,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1,2급 장애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수수료액표		수수료액표				
1. ~ 3. (생략)		1. ~ 3.(현행과 같음)				
4.검사	가, 나 (생략)	가, 나 (현행과 같음)				
	<신설>	4.검사	다. 끝밀도 검사	1회	4,500원	무료대상자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인 자 1,2종 의료 급여수급 권자 1,2급 장애 인